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,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에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등 5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

제1조(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졸업한”을 “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의 생활복지사란 나목 중 “졸업한”을 “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8 구분란 제2호가목 중 “졸업한 자”를 “졸업한 자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고등학교졸업자”를 “고등학교졸업자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(「자연공원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비고 중 “졸업한”을 “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
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나목(5) 및 같은 호 다목 중 “졸업한”을 “졸업했거나 졸업
예정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가축방역사)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	제10조(가축방역사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·축산학·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<u>졸업한</u>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졸업했</u> <u>거나 졸업예정인</u> ----- -----
3.·4. (생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